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2월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# 1. 개정이유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에 따라 우리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위기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 (안 제명)

- (현행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
(개정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

나.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명칭 등 정비 (안 전체)

다. 위원 임기, 해촉,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정비 (안 제4조 ~ 안 제6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

1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아동청소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청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(우편번호 03660)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(연희동)  
서대문구청 제3별관 2층 아동청소년과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30-4911, 팩스 02-3140-8378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』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 내용	의 건	비 고